



# 【검토보고서】

2019. 9. 3.(화)  
제309회 임시회

##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

**양주시의회**  
Yangju City Council

**【전문위원 김영헌】**



# 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경과

가. 제안자 : 양주시장(안전건설과장)

나. 제출일 : 2019년 8월 27일

### 2. 제안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「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

### 4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연재해대책법」

나. 입법예고 : 2019. 3. 14. ~ 4. 3.(20일간)

다. 부서협의 결과

- 부패영향평가 : 폐지조례안으로 제외 대상
- 성별영향분석 평가 : 폐지조례안으로 제외 대상
- 규제심사 등 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개요

- 본 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개정(2016.01.27.)되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전에는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### [관계법령]

#### 「자연재해대책법」

#### 제4조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) ① ~ ④ 생략

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6. 1. 27., 2017. 7. 26., 2017. 10. 24.>

⑥ ~ ⑦ 생략

### 나. 종합의견

- 「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」(2006.05.22 조례 제237호)를 제정하여 시행 중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이 일부 개정(2016.01.27.)되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전에는 “대통령령과 지방자치 단체”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“대통령령”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